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8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안산공무원대상' 을 신설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시정 발전 및 주민 편의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

○ (타 시와 비교) 검토한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또는 조례 위임에 따른 규칙에 가산점, 우선승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명시하여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적극 우대하고 시장 표창에 대한 영예성을 고취하고 있음.

○ (현 인센티브제) 친절·자원봉사·규제개혁 등 각 분야의 업무 유공에 대한 공무원의 가산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정 전체의 관점에서 시정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며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되는 우수 공직자에 대한 표창 신설 필요

○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조문 정비

□ 주요내용

○ 안산공무원대상 부여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4조)

○ 안산공무원대상의 특전(인센티브)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4.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5.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
6. 전보 희망 부서 결원 시 우선 전입

총무과 - 이성준 - 2024-05-16 15:09:23 - ***.*.***.82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4】

☐ **입법예고: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2. 22. ~ 3. 14.(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재 : 【붙임 6】

총무과 - 이상준 - 2024-05-16 15:09:23 - ***.*.***.82

【붙임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상장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및 안산공무원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산공무원대상) 안산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4.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5.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
6. 전보 희망 부서 결원 시 우선 전입

제12조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을 “출석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총무과 - 이상준 - 2024-05-16 15:09:23 - ***.*.***.82

중 “포상은 인사업무”를 “포상의 경우 인사업무”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산시공무원대상 특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호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 운영 규정」 개정 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총무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김 영 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정 남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상 준 (행정 2112)

총무과 - 이상준 - 2024-05-16 15:09:23 - ***.*.***.82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조례에 따른 ---------- ---------- ---------- ---------- ---------- ---------- ---------- ---------- ----------.
제4조(포상의 종류 및 표창부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및 표창부문) --- ----------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및 안산공무원대상---------.
<신 설>	제8조의2(안산공무원대상) 안산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4.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5.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

총무과 - 이성준 - 2024-05-16 15:09:23 - ***.*.***.82

	선 승진 고려 6. 전보 희망 부서 결원 시 우선 전입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포상절차) ① ---------- ---------- 「정부 표창 규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문별심사위원회) 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와 필요시마다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당 공적심사 후 포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14조(부문별심사위원회) ①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서	제15조(회의) ①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총무과 - 이성준 - 2024-05-16 15:09:23 - ***.*.***.82

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의 경우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무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 포상의 경우 인사업무 ---------.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과 - 이성준 - 2024-05-16 15:09:23 - ***.*.***.82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428호

제안년월일 : 2024. 6. 1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공무원대상을 신설하면서 특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경우에 수여하는지 그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안산공무원대상의 표창 대상을 규정 (안 제8조)

○ 안 제8조의2 항 신설 반영 및 오타 정비 (부칙 수정)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안산공무원대상은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 및 주민 편의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부칙 제2조의 제목 "(안산시공무원대상 특전에 대한 적용례)"를 "(안산공무원대상 특전에 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의2제4호"를 "제8조의2제2항제4호"로,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 운영 규정」"을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제 운영 규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8조의2(안산공무원대상) <신 설>	제8조의2(안산공무원대상) ① 안산공무원대상은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 및 주민 편의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안산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4.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5.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 6. 전보 희망 부서 결원 시 우선 전입	②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안산시공무원대상 특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호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 운영 규정」 개정 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안산공무원대상 특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제4호----------「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 운영 규정」----------.